

제 1258 호
1986. 3.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편집인 : 공 보 관 이 광 우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 | | | | |
|---|------|------|-----|-----|
| 제 | 보도국장 | 공보국장 | 공보관 | 공보관 |
| | | | | 공보관 |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2074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3
- 제 2075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 제 2076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 제 2077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5
- 제 2078 호 :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7
- 제 2079 호 :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7
- 제 2080 호 :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8
- 제 2081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8

< 이 면 계 속 >

| | | | | | | | | | | | |
|--------|--|--|--|--|--|--|--|--|--|--|--|
| 공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 |
|------------------------------------|---|
| 제 2082 호 :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 9 |
| 제 2083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 9 |

◎ 규 칙

| | |
|--------------------------------------|----|
| 제 2131 호 : 서울특별시의 구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 10 |
| 제 2132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 10 |
| 제 2133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 11 |

◎ 고 시

| | |
|---------------------------------------|----|
| 제 156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결정 | 12 |
| 제 157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 실효 및 지적승인 | 13 |
| 제 158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변경 | 13 |
| 제 159 호 :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14 |
| 제 160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44-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 15 |

◎ 공 고

| | |
|----------------------------------|----|
| 제 17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6 |
| 제 17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25 |

◎ 사 련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 3. 17

서울특별시장염보현 團

○ 서울특별시조례제 2074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급정원내용중 행정직 "335"를 "333"으로하고 "환경직 2"를 신설하며, 별정직정원 "72"를 "74"로하고 정원내용중에 6급상당 "25"를 "26"으로하고 팔호안의 자료분석요원 "3"을 "4"로하고 7급상당 "24"를 "25"로하고 팔호안의 "영화조정기사 1"을 삭제하고, 자료조사원 "2"를 "4"로하고 고용직정원 "358"을 "348"로하고 정원내용중 청부 "54"를 "48"로 기계공 "16"을 "14"로 전공 "18"을 "16"으로하며, 합계란정원 "1,663"을 "1,655"로한다.

(별표 1-2) 경찰국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정원 "584"를 "588"로하고 정원내용중 전공 "12"를 "13"으로 청부 "13"을 "14"로 타자원 "31"을 "32"로 기계공 "31"을 "32"로하고 합계란 정원 "649"를 "653"으로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일반회계중 6급정원 "911"을 "928"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12"를 "729"로 하며, 7급정원 "1,200"을 "1,234"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841"을 "854"로하고 "환경직 21"을 신설하며, 8급정원 "1,675"를 "1,72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279"를 "1,330"으로하며, 9급정원 "1,744"를 "1,761"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405"를 "1,422"로 하며, 기능직정원 "91"을 "94"로 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의 전기장 "41"을 "42"로 8등급의 전기원 "38"을 "40"으로 하며, 고용직정원 "1,698"을 "1,929"로 하고 정원내용중 기계공 "64"를 "66"으로 전공 "262"를 "267"로 청부 "177"을 "178"로 감시원 "261"을 "482"로하고 동정원내용에 "조절수 2"를 신설하며, 합계란정원 "7,789"를 "8,142"로한다.

(별표 3) 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정원표중 고용직정원 "56"을 "57"로 하고 정원 내용중 운전원 "4"를 "5"로하며, 합계란 정원 "80"을 "8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 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75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234"를 "237"로하고 정원내 용중 전공 "1"을 "2"로 기계공 "4"를 "5"로 청부 "18"을 "19"로하며 합계란 정원 "1,163"을 "1,16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 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76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직무) 중 "제 4 호"를 삭제하고 "제 5 호"를 "제 4 호"로 하며, 제 4 조 (소장) 제 1 항중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를 "보라매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 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로 하며, 제 6 조 (하부조직) 제 1 항중 "어린이대공원"을 "보라매공원"으로하며,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및 "(별표 2) 명칭 및 관할구역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폐지에 관한 사항은 86.1.1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의직 6 급 1, 수의직 7 급 1, 간호직 9 급 1, 사육원 12, 교환원 1, 감시원 3, 안내원 6, 매표원 10, 계 35 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 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 | |
|---|--|---|
| <u>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u> | | |
| (공원관리사무소) | | |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4급 | 1 | 행정직 또는 별정직 1 |
| 5급 | 2 | 행정직 또는 농림직 1, 농림직 1 |
| 6급 | 5 | 행정직 3, 농림직 2 |
| 7급 | 7 | 행정직 2, 농림직 3, 토목직 2 |
| 8급 | 8 | 행정직 3, 농림직 3, 토목직 2 |
| 9급 | 12 | 행정직 7, 전기직 1, 농림직 3, 토목직 1 |
| 기능직 | 1 | 7등급:전기장 1 |
| 고용직 | 82 | 운전원 5, 전공6, 기계공 3, 사육원 2, 수위 4, 타자원 2, 청부 10, 매포원 10, 원정 18, 감시원 17, 잡무원 4, 전담부 1 |
| 합 계 | 118 | |
| (별표 2) | | |
| <u>명 칭 및 관 할 구 역 표</u> | |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 남산공원 일원 장충단공원 일원 한남공원 일원 | |
|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 보라매공원으로 책정된 구역 |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들 이에 공포한다. 1986. 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 서울특별시조례제 2077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 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 |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4급정원 "7"을 "8"로 하고 정원 내용중 공업직 "3"을 "4"로하며, 6급정원 "34"를 "37"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2"를 "13"으로 기계 또는 전기직 "12"를 "13"으로 화공 또는 토목직 "8"을 "9"로하며, 7급정원 "38"을 "4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0"을 "11"로 화공 또는 토목직 "17"을 "19"로 전기직 "1"을 "2"로 기계직 "1"을 "2"로하며, 8급정원 "47"을 "5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을 "12"로하고 "기계직 1"과 "토목직 1"을 신설하며, 9급정원 "44"를 "4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5"을 "26"으로 하고 "전기직 1"과 "화공직 1"을 신설하며, 별정직 정원 "27"을 "30"으로 하고 정원

내용중 6급상당(예비군소대장) "9"을 "10"으로 7급상당(교압가스 관리기사) "10"을 "11"로 8급상당(교압가스안전관리원) "8"을 "9"로 하며, 기능직정원 "67"을 "79"로 하고 정원내용중 6등급의 전기 또는 통신장 "5"를 "6"으로 "7등급:기계 또는 전기장 34"를 "7등급:기계, 전기 또는 통신장 37"로 8등급:기계 또는 전기원 "1"을 "3"으로 9등급의 전기원 "10"을 "11"로 기계원 "10"을 "11"로 10등급에 전기수 "7"을 "9"로 하고 "기계수 2"을 신설하며, 교용직정원 "809"을 "874"로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42"를 "45"로 전공 "129"를 "144"로 기계공 "60"을 "69"로 타자원 "11"을 "12"로 조절수 "499"를 "534"로 청부 "6"을 "7"로 전달부 "11"을 "12"로하고 합계란 정원 "1,077"을 "1,172"로하며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업 의 명 칭

| 구 분 | 명 칭 |
|---------------|--|
| 수 도 관 리 사 업 소 | 1. 북부수도관리 사업소 2. 남부수도관리 사업소 |
| 수 원 지 사 무 소 | 1. 팔당수원지 사무소 2. 구의 수원지 사무소 3. 북도 수원지 사무소 4. 보광동 수원지 사무소 |

| 구 분 | 명 칭 |
|---|---|
| | 5. 노량진수원지사사무소 6. 영등포수원지사사무소 7. 선유수원지사사무소 8. 김포수원지사사무소 9. 암사수원지사사무소 |
| 배수지사사무소 | 1. 대현산배수지사사무소 2. 만리동배수지사사무소 3. 청담동배수지사사무소 4. 우면산배수지사사무소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p> <p>◎서울특별시조례제 207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36"를 "37"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1"를 "2"로</p> | <p>하며 합계란 정원 "46"을 "47"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p> <p>◎서울특별시조례제 207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p> |

직정원 "12"를 "1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보모 "2"를 "3"으
로 하며 합계란 정원 "34"를
"3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80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7급
정원 "14"를 "15"로 하고 정원
내용중 행정직 "7"을 "8"로 하
며, 고용직 정원 "165"를 "173"
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기계공 "20"
을 "21"로 전공 "15"를 "16"
으로 원정 "3"을 "4"로 수위
"10"을 "12"로 청부 "3"을
"6"으로 하며, 합계란 정원 "227"
을 "23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81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6급
정원 "50"을 "54"로 하고 정원
내용중 기계직 "7"을 "9"로 전
기직 "6"을 "8"로 하고 7급정원
"26"을 "37"로 하고 정원 내
용중 행정직 "9"를 "12"로 토목
직 "3"을 "4"로 전기직 "5"
를 "8"로 농림직 "1"을 "2"
로 기계직 "4"를 "7"로 하며
8급정원 "6"을 "8"로 하고 정
원내용중 행정직 "5"를 "7"로
하며, 고용직 정원 "11"을 "12"
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2"
를 "3"으로 하고 합계란 정원
"118"을 "13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82 호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직급란 9급 다음에 "별정직 1:7급 상당(민방공 경보통제요원) 1"을 신설하고 합계란 정원 "23"을 "2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8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 (허부조직) 제 1항중 "등록과 및 증사과를 두고"를 "등록과, 검사과 및 시소를 두고"로 하고 "관리과장 및 등록과장은"을 "관리과장, 등록과장 및 지소장은"로 하며, 동조 제 2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⑤지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관수 및 청사관리
2. 분소내 인사, 복무 및 직원후생
3. 자동차 등록에 관한 민원처리
4. 자동차 검사에 관한 민원처리
5.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 과징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5급정원 "3"을 "4"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3"으로 하며, 6급정원 "9"를 "14"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11"로 기계직 "2"를 "3"으로 하며, 7급정원 "14"를 "19"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을 "15"로 기계직 "3"을 "4"로 하며, 8급정원 "40"을 "42"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8"을 "39"로 기계직 "2"를 "3"으로 하며, 9급정원 "39"를 "38"

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37"을 "36"으로 하며, 고용직 정원 "30"을 "67"로 하고 정원내용중 타자원 "13"을 "37"로 수위 "1"을 "3"으로 운전원 "2"를 "3"으로 기계공 "1"을 "2"로 전공 "1"을 "2"로 청부 "5"를 "9"로 감시원 "5"를 "8"로 전달부 "1"을 "2"로 하며, 합계란 정원 "138"을 "187"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① (지소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지소의 설치하는 지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규 칙 |
|------------|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31 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거획감사과) 제 1 항중 "감사계와 사회지도계를 두고"를 "감사계, 조사계 및 사회지도계를 두고"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제 3 호"를 "제 4 호"로 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계

- 가.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처치
- 나.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등 민원사항 처리다.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32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①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

에 사무제, 운영제 및 시설제를 두고, 사무제장과 운영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제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② 사무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제

- 가. 문서, 관인 및 기밀
- 나. 인사,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 다. 공원내 출입통제와 경비
- 라. 공원내 청소와 미화
- 마. 사무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제

- 가. 공원운영의 종합계획
- 나. 공원내 시설의 운영 및 통제
- 다. 공원내 질서유지
- 라. 공원이용자에 대한 안내, 공보와 편익제공
- 마. 공원내 출입자의 보호

3. 시설제

- 가. 공원개발의 종합계획
- 나. 공원시설의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관리
- 다. 수목관리와 유지보호
- 라. 공원내 식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사무

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3.17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3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사무
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지 소) 및 제 6 조 (관할구역)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 (지 소) ①지소에 사무제, 등록 1 제, 등록 2 제, 등록 3 제 및 검사세를 두고, 사무제장, 등록 1 제장, 등록 2 제장 및 등록 3 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검사제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지소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제

- 가. 관인관수, 문서, 보안 및 청사관리
- 나. 자동차등록에 따른 각종 지방세의 부과징수
- 다. 지소내 전산단말기의 운영관리
- 라. 지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등록 1 제

| | |
|--|--|
| <p>가. 자동차신규, 부활등록 나.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검사증재교부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의 통계 관계</p> <p>3. 등록 2 제 가. 자동차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전입전출에 관한 사항</p> <p>4. 등록 3 제 가. 자동차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근저당설정말소 및 압류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제증명에 관한 사항</p> | <p>라.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에 관한 사항</p> <p>5. 검사제 가. 자동차검사(신규, 계속, 임시, 타관할 예비)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다. 원동기 및 차대재각자에 관한 사항 라. 기관 재사용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등록번호표봉인에 관한 사항</p> <p>제 6 조 (관할구역) ①자동차관리사업소와 지소의 분장사무는 구역별로 분담하되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자동차관리사업소사무분담구역표

| 기 관 별 | 분 담 구 역 |
|------------------------|---|
| 자 동 차 관 리 사 업 소 |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9 개구청) |
| 자 동 차 관 리 사 업 소 지 소 |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8 개구청)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56 호

주택 개량재 개발사업 계획 결정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로 구역지정된 오금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5 항 및 같은법 제 8 조와

같은법 시행령제 5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강동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아 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동구오금동 396 번지 일대 ○ 면적 : 21,400 ㎡ ○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 : 20,155 ㎡ 도로 : 1,245 ㎡ ○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용도 : 주택 및 부대부리시설 · 건립형태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건축율 : 25 %이내 · 용적율 : 250 %이내 · 최고높이 : 45 m 이내 · 배치도 : 별첨 (생략) <p>가. 광장실효 및 지적승인조서</p>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고시제 15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 (광장) 실효 및 지적승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부고시 제 89 (86.3.3) 호로 결정 고시된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광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서울시 고시 889 호 (85.12.26) 로 기고시된 내용중 광장에 대해서는 결정 및 지적고시를 동일자로 실효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p style="text-align: right;">1986.3.17 서울특별시장</p> |
|--|--|

| 구분 |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비 고 |
|----|-----|------|------------------|--------|-----|
| 실효 | | 광 장 | 구로구가리봉동 515-6 일대 | 19,000 | |
| 신설 | 171 | 교통정장 | " | 19,000 | |

나.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도면 : 별첨과 같음 (도면생략)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고시제 15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4 호 (81.10.31) 로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0 호 (85.6.26) 로 시행허가 변경된 구로구 구로동 339-29 일대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24 조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제 1 항 제 27 조의 2 제 3 항과 제 6 조 1 항에 의거 사업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p style="text-align: right;">1986.3.17 서울특별시장</p> |
|---|--|

| | |
|----------------------------------|---|
| 1) 사업시행지 : 구로구구로동 339-29 일대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북구 안암동 5가 1-2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상만 |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 |
| 4) 사업시행규모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 대 지 면 적(㎡) | 40,992 | 40,992 | |
| 건 축 면 적(㎡) | 6,591.86 | 6,591.86 | |
| 건축연면적(㎡) | 28,237.52 | 28,330.09 | 증) 92.57 ㎡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당초 : 1981.11 - 1986.10.30
 변경 : 1981.11 - 1986.12.30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별첨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별첨생략)

44-2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 5조,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마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1. 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 제 1구역 제

가.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조서(마포로제 1구역)

1) 건축계획변경 결정조서

1986.3.17

서울특별시 장

| 구분 | 지구명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 수 | 주용도 | 배 열 | 비 고 |
|----|--------|----------|----------|-----------|-------|-----------|-----|-----|
| 기정 | 제 44-2 | 1,712 ㎡ | 40%이하 | 300%이하 | 지상 5층 | 업무시설 | 생 략 | |
| 변경 | " | 1,713.1㎡ | 36 - 38% | 178-185 % | 5 / 1 | 업무시설 및 판매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160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44-2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85 호('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146 호('80.5.19)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 367 호('83.7.20)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44-2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8 조,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6.3.17

서울특별시장

가. 인가내용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1 구역 44-2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마포구 도화동 18-2 번지의 4 필지
- 3) 시행면적 : 1,912.3 ㎡
- 4) 시행자 :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최주호
-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강남구 서초동 182 번지

- 6) 시행기간 : '86.3 - '86.12.31
- 7) 건축계획 (건축규모 및 세율은 건축비가로 확정함)
 - 대지면적 : 1,713.1 ㎡
 - 건폐율 : 36.27 %
 - 용적율 : 179.6 %
 - 층 수 : 지상 5 층, 지하 1 층
 - 주용도 : 업무시설 (지하 1 층 및 지상 4 층일부 : 판매시설)
- 8)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9) 사업시행계획서 : 별첨
- 10) 규약 : 별첨 (생략)

나. 인가조건

- 1)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제 2 항 및 지적법 제 21 조,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즉시 관할구청 및 등기소에 인가 비용을 통지하고,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도 동법 제 40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8 조 제 39 조에 의한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수 있도록 통지할 것이며, 분양신청 기간 종료후 동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할 것.
- 2) 공공용지 부담에 따른 공공시설은 별도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것.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7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46호('76.9.2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된 석관동 168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의 3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86.3.18 - '86.3.31

1986.3.17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 사업시행지 | 사업의종류명칭 | 사업의규모 | 사업시행자 |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시설결정및지적승인 |
|------------------------|-------------------------------|------------------------------|--------------|-----------------|--|
| 석관동 168의 7-133의 1 | 석관동 168번지주변도로개설 | 도로개설 B=8m, L=300m | 서울특별시 시 장 | 인가일 - '87.1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 246호('76.9.24) |
| 종암동 61의 4-53의 1 | 종암동 57-68간 도로확장공사 | 도로확장 B=6-12m L=250m | " | 인가일 - '87.12.20 | 건설부고시제 177호 ('62.12.8) 건설부고시제 175호 ('63.8.19) |
| 장위동 105의 7-37의 58 | 장위 3동 105번지주변 소방 도로개설공사 | 도로개설 B = 6 m L = 230 m | " | 인가일 - '87.1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 28호('74.3.15) |
| 하월곡동 90의 1901-90의 1918 | 종암로 - 하월곡 90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 도로개설 B = 8 m L = 260 m | " | 인가일 - '87.1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 3호 ('69.1.18) |

1) 수용 또는 사용토지, 건물의 소재, 지번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생략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3)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 (석관동도로개설공사) 건물 조 서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건물의 종 류 | 구조 및 규 격 |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 소유자주소성명 | 소유권이외의 권 리 명 세 | |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 |
| 1 | 133-2 | | 연와조기와 | 16㎡ | 2층 16㎡ | 석관 133-2 이복성 | 2층 근린생활시설주택 | |
| 2 | 133-62 | | 연와조기와 | 8㎡ | 2층 8㎡ | 석관 133-62 박광하 | 2 층 | |
| (석관동도로개설) 토 지 조 서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전입면적 (㎡)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의 권 리 명 세 | 비 고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 | |
| 1 | 석관동 176-95 | 도로 | 175 | | 도봉구월계동 429-30 | 정 주 환 외 8 인 | | |
| 2 | 176-12 | 도로 | 461 | | 종로구창신동 457-20 | 정 일 주 | | |
| 3 | 133-8 | 담 | 159 | | 도봉구월계동 429-30 | 정 주 환 | | |
| (장위동107번지도로개설) | | | | | | | | |
| 1 | 105-7 | 대지 | | 1 | 도봉구번동 37-6 | 이 현 행 외 1 인 (의정부지점) 경기은행 | 저당권설정 | 915-9430 |
| | | | | | 인천중사동 9-1 | 김 중 곤 | | 903-0977 |
| 2 | 105-9 | " | | 1 | 동대문휘경 293-47 | " | | |
| 3 | 105-10 | " | | 341 | 상 동 | " | | |
| 4 | 105-12 | " | | 36 | 장위 105-2 | 정 태 선 | | 917-2927 |
| 5 | 105-15 | " | | 13 | " 105-4 | 김 정 식 (당산지점) 국민은행 | 저당권설정 | |
| 6 | 105-16 | " | | 54 | 장위 105-5 | 양 동 수 | | |
| 7 | 109-16 | 도로 | | 20 | 미아 324-101 | 박 동 필 | | |
| 8 | 109-4 | 담 | | 397 | 경기양주진접내거리293 | 한 선 춘 | | |
| 9 | 108-1 | 대 | | 61 | 장위 107 | 한 천 질 | | 915-7730 |
| 10 | 110-8 | " | | 105 | 장위 112-4 | 송 근 수 | | |
| 11 | 110-3 | " | | 50 | 하월곡 77-558 | 유 정 우 | | |
| 12 | 110-7 | " | | 65 | 장위 112-2 | 장 태 석 | | |
| 13 | 111-3 | " | | 126 | 월계 18(A) 34-407 | 김 진 우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비 고 |
|----------|------------|----|-----------|-------------|-------------|-------|----------------|----------|
| | | | | | 관 계 인 주소 성명 | | | |
| 14 | 36-49 | 대 | | 84 | 장위 36-20 | 윤 장 한 | | 917-5950 |
| 15 | 36-43 | 도 | | 76 | 장위 68-634 | 서 석 홍 | | |
| 16 | 36-47 | 대 | | 1 | 장위 74-187 | 정 세 옥 | | |
| 17 | 36-48 | " | | 1 | 동 상 | | | |
| 18 | 36-54 | " | | 6 | 장위 36-23 | 이 한 식 | | |
| 19 | 36-52 | " | | 156 | 창위 36-22 | 한 수 남 | | |
| 20 | 36-51 | | | 1 | 장위 36-21 | 이 창 수 | | |
| 21 | 107-9 | 대지 | | 1 | 장위 107 | 한 천 길 | | |

건 물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건물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량 (㎡)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 비 고 |
|----------|------------|--------------|------------|-----------|------------|--------------|---------------|----------------|------------|
| | | | | | | 관 계 인 주소 성명 | | | |
| 1 | 105-7 | 연 와 조 슬라브 | | 1 | | 도봉번동 37-6 | 이 천 행 | 근저당실정 | 주택및 점 포 |
| | | | | | | 인천중사동 9-1 | 경기은행 의정부지점 | | |
| 2 | 105-9 | 천 근 콘크리트 | 슬라브 | 1 | | 동대문휘경 293-47 | 김 중 곤 | | 주 택 점 포 |
| 3 | 105-11 | 연 와 조 | 세멘외죽 | 1 | | 동 상 | | | 장독대 |
| 4 | -12 | 연 와 조 | " | 36 | | 장위 105-12 | 서 태 선 | | |
| 5 | -12 | 장 독 대 | | 4 | | " | " | | |
| 6 | -5 | 연 와 조 | 세멘외죽 | 5 | | 장위 105-5 | 양 동 수 | | |
| 7 | 109-1 | 세멘블럭 | 슬레트 | 3 | | 경기양주진접내자293 | 한 선 춘 | | 장독대 |
| 8 | 108 | " | " | 26 | | 장 위 107 | 한 천 길 | | |
| 9 | 112-4 | 연 와 조 | 세멘외죽 | 5 | | 장 위 112-4 | 송 근 수 | | |
| 10 | 112-4 | 장 독 대 | | 6 | | 동 상 | | | |
| 11 | 109-9 | 연 와 조 | 세멘외죽 | 3 | | 장 위 109-9 | 손 태 감 | | |
| 12 | -10 | " | " | 3 | | 장 위 109-10 | 이 정 호 | | |
| 13 | 111-10 | " | " | 3 | | 종로화동 102 | 이 천 회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건물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량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의 관 리 명 세 | 비 고 |
|----------|------------|------------|------------|----|------------|------------|---------|-----------------|-----|
| | | | | | | 관 계 인 주소성명 | 소유자주소성명 | | |
| 14 | 36-20 | 세멘트벽 | 슬랫 트 | 26 | | 장위 36-20 | 윤장한 | | |
| 15 | -23 | " | 세멘트와 | | | 장위 36-23 | 이한식 | | |
| 16 | -53 | " | 슬랫 트 | 16 | | 장위 36-22 | 한수남 | | |
| 17 | -22 | 목 조 | 와 즈 | 20 | | 장위 36-22 | 한수남 | | |
| 18 | -22 | " | " | 28 | | 동 상 | | | |

토 지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면적 | 전 입 면 적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의 관 리 명 세 |
|----------|--------------|----|----|-------------------|------------|------------|------------------------------------|-----------------------------------|-----------------|
| | | | | | | | 관 계 인 주소성명 | 소유자주소성명 | |
| 1 | 종암동 56-78 | 대지 | | 29 m ² | | | 제주도남제주군남원읍와귀리77 중구올지로 2 가 181번지 | 김 준 배 한국외환은행 (부평지점) | 근저당설정 |
| 2 | 56-77 | " | | 71 m ² | | | 종암동 56-19 | 김 규 종 | |
| 3 | 56-11 | " | | 53 m ² | | | " 62-20 | 김 순 배 | |
| 4 | 56-76 | " | | 6 m ² | | | " 56-20 중구남대문 2 가 9-1 | 이 강 록 국 민 은 행 (중부지점) | 근저당설정 |
| 5 | 56-75 | " | | 74 m ² | | | 종암동 61-2 | 이 길 자 | |
| 6 | 56-74 | " | | 40 m ² | | | 부산시남구대연동55-12 | 황 원 길 | |
| 7 | 55-62 | " | | 77 m ² | | | 상 동 | " | |
| 8 | 55-61 | " | | 57 m ² | | | 종암동 55-49 | 전 석 호 | |
| 9 | 55-60 | " | | 82 m ² | | | " 응암 2 동 602-1 | " 응 암 2 동 새마을금고 | 640만 설정 |
| 10 | 55-63 | " | | 14 m ² | | | 종암동 55-26 중구태평로 2 가 250 | 정 명 회 동방생명보험 | 근저당설정 |
| 11 | 55-59 | " | | 77 m ² | | | 종암동 55-26 | 정 명 회 | |
| 12 | 55-57 | " | | 36 m ² | | | 용산구한강로 1 가 270-2 | 김 사 원 | |
| 13 | 55-56 | " | | 47 m ² | | | 종암동 55-12 중구남대문 2 가 10-1 | 우 재 명 서 울 신 탁 은 행 (종암지점) | 근저당설정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 면적 | 입 년 적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
|----------------|--------------|------------|--------------|-----|-------------|---------------------|---|---|---------------|
| | | | | | | | 관 계 인 주소성명 | 관 계 인 주소성명 | |
| 14 | 종암동 55-55 | 대지 | | 22㎡ | | | 종암동 55-12 | 정 덕 균 | |
| 15 | 55-54 | " | | 3㎡ | | | 종암동 55-43 중구남대문 2가 10-1 중구남대문 2가 9-1 설정 | 나 홍 영 서울신탁 (가락동) 국민은행상동 지점 및 본점 | 근저당설정 |
| 16 | 55-53 | " | | 32㎡ | | | 종암동 55-30 | 주 혜 신 | |
| 17 | 53-55 | " | | 9㎡ | 도로 | | 종로구계동 1 | 재 단 법 인 중 앙 학 원 | |
| 18 | 53-54 | " | | 2㎡ | | | 종암동 53-8 | 최 정 남 | |
| 19 | 53-53 | " | | 2㎡ | 도로 | | 안암 5가 1-2 | 학 교 법 인 교 양 학 원 | |
| 20 | 53-52 | " | | 3㎡ | | | 종암동 53-23 | 정 창 영 | |
| 21 | 53-51 | " | | 17㎡ | | | " 53-6 | 박 종 진 | |
| 22 | 53-50 | " | | 8㎡ | | | " 53-6 | 유 우 회 | |
| 23 | 61-9 | " | | 19㎡ | | | " 61-2 | 전 유 석 | |
| 24 | 63-3 | " | | 6㎡ | | | " 20-5 | 김 성 태 | |
| 25 | 63-4 | " | | 29㎡ | | | " 62-9 | 황 우 현 | |
| 26 | 64-4 | " | | 9㎡ | | | " 62-8 | 김 성 회 | |
| 건 물 조 서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건물의 종류 | 구조및 규격 | 수량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 |
| | | | | | | 관 계 인 주소성명 | 관 계 인 주소성명 | | |
| 1 | 종암동 56-19 | 주택 및 점포 | 세멘브릭 세멘기와 | 43㎡ | | 종암동 56-19 | 김 규 종 | | |
| 2 | 56-11 | " | " | 35㎡ | | " 62-20 | 김 순 배 | | |
| 3 | 56-10 | " | 목 조 세멘기와 | 42㎡ | | " 61-2 | 이 길 자 | | |
| 4 | 55-23 | 주 택 | 세멘브릭 스래트 | 17㎡ | | " 55-23 | 남 상 도 | | |
| 5 | " | 점 포 | 목 조 스래트 | 28㎡ | | " 55-23 | 남 상 도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건 물 의 종 류 | 구조 및 규 격 | 수 량 | 실제이 용 상황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 | 소유권이의 권리명세 |
|----------|--------------|--------------|----------------|-----|-------------|-----------------------------|---------------------|---------------------|
| | | | | | | 관 계 인 주 소 성 명 | | |
| 6 | 중암동 55-23 | 주 택 | 목 조 세멘기와 | 75㎡ | | 부산시남구대연동 55-12 | 황 원 길 | |
| 7 | 55-16 | 주 택 집 포 | " | 62㎡ | | 중암동 55-49 | 전 석 호 | |
| 8 | 55-49 | 주 택 | 연 와 조 스 라 브 | 41㎡ | | " 응암 2 동 602-2 | " 응암 2 동 마을금고 | 근저당설정 |
| 9 | 55-49 | 차 고 | 세멘브릭 스 라 스 | 20㎡ | | 중암동 55-49 | 전 석 호 | |
| 10 | 55-46 | 주 택 | 연 와 조 세멘기와 | 2㎡ | | 중암동 55-26 | 정 명 회 | |
| 11 | 55-26 | " | 세멘브릭 스 레 트 | 4㎡ | | " | 정 혜 자 | |
| 12 | " | 주 택 집 포 | 목 조 포 함 석 | 73㎡ | | " | 정 혜 자 | |
| 13 | " | 집 포 | 연 와 조 세멘기와 | 27㎡ | | " 중구태평로 2 가 250 | 정 명 회 | 동방생명보근저당설정 함주식회사 |
| 14 | 55-35 | 집 포 | 세멘벽돌 스 라 브 | 28㎡ | 2 층 28㎡ | 용산구한강로 1 가 270-2 | 김 사 원 | |
| 15 | 55-12 | 주 택 및 집 포 | 연 와 조 스 라 브 | 18㎡ | 2 층 18㎡ | 중암동 55-12 중구남대문 2 가 10-1 | 우 재 명 서울신타 | 근저당설정 |
| 16 | 55-11 | 주 택 | 세멘벽돌 세멘기와 | 29㎡ | | 중암동 55-12 | 정 덕 균 | |
| 17 | 55-10 | 주 택 | 세멘벽돌 스 라 브 | 69㎡ | | " 55-38 | 주 혜 선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건물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 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원리명세 |
|----------|-------------|------------|--------------|-----|------------|-------------------------|-----------------------|---------------|
| | | | | | | 관계인 주소성명 | | |
| 18 | 종암동 53-8 | 점포 | 세멘벽돌 스레트 | 10㎡ | | 종암동 53-58 | 최정남 | |
| 19 | 53-23 | 주택 | 세멘벽돌 스레트 | 41㎡ | | " 53-23 | 정창엽 | |
| 20 | 53-6 | 주택 | 세멘벽돌 와즙 | 54㎡ | | " 53-5 | 박종진 | |
| 21 | 53-5 | 점포 | 세멘벽돌 스라브 | 41㎡ | | " 53-5 | 제용국 | |
| 22 | 53-5 | 주택 | 연와조 스라브 | 3㎡ | 2층 | " | " | |
| 23 | 53-5 | " | 연와조 스라브 | 19㎡ | 2층 | " | 박종진 | |
| 24 | 53-5 | 주택 및 점포 | 연와조 스라브 | 46㎡ | 2층 | " | 김공예 외 1명 | |
| 25 | 53-4 | 주택 | 목조와즙 | 36㎡ | | " 76-13 | 박덕원 | |
| 26 | 53-4 | 주택 및 점포 | 목조와즙 | 35㎡ | | | 이희철 | |
| 27 | 56-20 | 주택 | 세멘브릭 세멘기와 | 3㎡ | | " 56-20 중구남대문 2가 9-1 | 이강표 국민은행 (중부지점) | 근자당설정 |
| 28 | 61-2 | 점포 | 연와조 스라브 | 21㎡ | 2층 | 종암동 61-2 | 전유석 | |
| 29 | 62-125 | 주택 및 점포 | 연와조 스라브 | 9㎡ | 2층 | " 62-125 | 천기영 | |
| 30 | 62-14 | 주택 | 연와조 스라브 | 9㎡ | 2층 | " 62-96 | 김성태 | |

| 실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건물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량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
|----------|-------------|------------|------------|-------------------|------------|-----------|-----|---------------|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 |
| 31 | 종암동 63-3 | 집 포 | 세멘트 스래트 | 54 m ² | | 종암동 62-96 | 김성태 | |
| 32 | 62-9 | 주택 | 연와조 스라브 | 3 m ² | | " 62-9 | 황우천 | |

공사구간 추가조서 공 사 건 물 가 격 조 서

| 번호 | 소재지 | 구조 | 수용 면적 | 산 술 평 균 치 | 사 정 | | 소유자주소성명 | |
|----|-----------|--------------|-------------------|-----------------------|--------|--------|-----------|-----|
| | | | | | 단 가 | 금 액 | 관계인주소성명 | |
| 8 | 종암동 55-49 | 지하실 (보일러) | 5 m ² | | | | 종암동 55-49 | 전석호 |
| 20 | " 53-6 | 지하 (부엌) | 17 m ² | | | | " 53-5 | 박종진 |
| 26 | " 53-4 | 2층 (방) | 9 m ² | | | | " 53-4 | 이회철 |

(종암동~하월곡동 90
소방도로개설) 토 지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m ²) | 전입 면적 | 실제이 용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
|----------|-----------------|----|-------------------------|----------|------------|--------------|----------------|---------------|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 |
| 1 | 하월곡동 90-1879 | 대지 | 7 | | | 하월곡동 90-1661 | 김천만 | |
| 2 | 90-1880 | " | 12 | | | " 90-1662 | 이회봉 | |
| 3 | 90-1881 | " | 11 | | | " 90-1490 | 박종섭 | |
| 4 | 90-1882 | " | 7 | | | " 90-1480 | 주봉구 | |
| 5 | 90-1883 | " | 11 | | | " 90-1479 | 박민재 | |
| 6 | 90-1884 | " | 13 | | | " 90-1469 | 김근완 | |
| | | | | | | 도봉구쌍문동 619번지 | 북부단위농협 협동조합 | |
| 7 | 90-1885 | " | 10 | | | 하월곡동 90-1470 | 신봉세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 목 | 지적 (㎡)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 | 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 |
|----------|-----------------|-----|-----------|----------|-------------|-----------------|-----------------|-----------------|
| | | | | | | 관 계 인 주 소 성 명 | | |
| 8 | 하월곡동 90-1886 | 대지 | 14 | | | 하월곡동 90-1460 | 고 장 성 | 국민은행 (장위동지점) |
| 9 | 90-1887 | " | 30 | | | " 90-1360 | 최 상 근 | |
| 10 | 90-1888 | " | 31 | | | " 90-1344 | 이 태 윤 | |
| 11 | 90-1889 | " | 30 | | | " 90-1336 | 김 철 두 | |
| 12 | 90-1890 | " | 22 | | | 중구남대문 2가 9-1 | 국민은행 | |
| 13 | 90-1891 | " | 16 | | | 도봉구미아동 8-213 | 배 순 홍 | |
| 14 | 90-1901 | " | 8 | | | 하월곡 90-1332 | 김 균 주 | |
| 15 | 90-1902 | " | 37 | | | " 82-98 | 구 창 주 | |
| 16 | 90-1903 | " | 43 | | | 상 동 | 구 창 주 | |
| 17 | 90-1904 | " | 31 | | | 하월곡 81-69 | 양 재 권 | |
| 18 | 90-1905 | " | 31 | | | 중구남대문 2가 10-1 | (청계자점) 김 연 옥 | |
| 19 | 90-1906 | " | 36 | | | 하월곡 90-349 | 김 연 옥 | |
| 20 | 90-1907 | " | 30 | | | 상 동 | 김 현 분 | |
| 21 | 90-1908 | " | 29 | | | 하월곡 90-1503 | 연동상호신 용협동조합 | 근저당설정 |
| 22 | 90-1909 | " | 24 | | | 종로구연지동 136-22 | 이 재 모 | |
| 23 | 90-1910 | " | 38 | | | 하월곡 88-570 | 황 경 락 | 가 등 기 |
| 24 | 90-1911 | " | 29 | | | " 90-1530 | 김 기 평 | |
| 25 | 90-1912 | " | 23 | | | 중구산립동 28-1 | 안 용 환 | |
| 26 | 90-1913 | " | 31 | | | 하월곡 90-1533 | 정 성 물 | |
| 27 | 90-1917 | " | 18 | | | 성동구금호동 4가 698-2 | 홍 명 기 | |
| 28 | 90-1918 | " | 16 | | | 하월곡 90-1536 | 제일은행 | |
| | | | | | | 안성군서운면신촌리 10-1 | 이 종 권 | |
| | | | | | | 하월곡 90-1509 | 양 길 승 | |
| | | | | | | 상 동 | 선 병 부 | |
| | | | | | | 하월곡 90-43 | 고 순 회 | |
| | | | | | | " 90-1296 | 강 익 영 | |
| | | | | | | 성북구길음동 509-18 | | 근저당설정 |

◎서울특별시공고제 17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7 호 ('78. 9.12)로 시설결정 및 기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 690 호, '78.12.30)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의 22 호의 12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

기 바란다.

1986. 3. 17.
서울특별시 장

— 공 랑 개 요 —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22 의 12 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답십리동 3 의 22 -12 의 36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폭 10 m, 길이 : 10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5.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50 일 이내 - 87.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3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 별첨
8. 공람장소 : 동대문구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란다.

동대문구교전입로개설공사 토 지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 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이용 상 황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 |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
|----------|--------------|-----|-----------|-----------------|-------------|------------------------------------|-------|----------------|
| | | | | | | 관 계 자 주 소 성 명 | | |
| 1 | 답십리동 3-22 | 대 | 38 | 38 | 대 지 | 동대문구답십리동 3-22 | 박 태 호 | |
| 2 | 2-247 | " | 26 | 26 | " | 강남구청담동 81 번지 (효성빌라 5 동 103 호) | 김 재 욱 | |
| 3 | 749 | " | 204 | 204 | 대지 및 도 로 | 강남구청담동 81 번지 (효성빌라 5 동 103 호) | 김 재 욱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 목 | 지적 (㎡) | 면적 (㎡) | 실제이용 상 황 | 소유자 주소성명 | | 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 |
|----------|-------------|-----|-----------|-----------|-------------|------------------------------|---------|------------------------------|
| | | | | | | 관 | 제인주소성명 | |
| 4 | 답십리동 745 | 대 | 31 | 31 | 도 로 | 압구정동 289 (현대 APT 209-105) | 이 순 양 | |
| | | | | | | 압구정동 289 (현대 APT 209-105) | 오 경 자 | |
| 5 | 744 | " | 34 | 34 | " | 장안동 335-5 | 전 필 순 | |
| | | | | | | 답십리동 739 | 오 병 환 | |
| | | | | | | 서소문 5가 14 | 조흥은행 | 근저당 (채권액 4,050만원) |
| | | | | | | 대전은행 48-1 | 충청은행 | (채권액 3,000만원) |
| | | | | | | 반포동 84-1 | 한성상호금고 | (채권액 1,500만원) |
| 6 | 743 | " | 33 | 33 | " | 동대문구답십리동 4-51 | 조 일 목 | |
| 7 | 736 | " | 131 | 131 | " | " 21-71 | 김 회 선 | |
| 8 | 733 | " | 54 | 54 | " | " 315 | 신 패 득 | |
| | | | | | | | 서울특별시 | 압류(1980. |
| | | | | | | | (동대문구청) | 12.29) |
| 9 | 732 | 하천 | 58 | 58 | " | | 동양척식(주) | |
| 10 | 731 | 전 | 29 | 29 | " | 동대문구장안동 139-24 | 김 대 욱 | |
| | | | | | | 남대문로 2가 10-1 | 서울신탁 |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12,800만원) |
| | | | | | | | 은행 (주) | |
| 11 | 730 | 대 | 46 | 46 | " | 동대문구장안 217-2 | 김 훈 서 | |
| 12 | 748 | 전 | 417 | 417 | " | | 서울특별시 | |
| 13 | 2-36 | 도로 | 609 | 609 | " | | 서울척식 | |

| 동답국교진입로개설공사 물 건 조 서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량 (㎡) | 실제이용 상 황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 |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
| | | | | | | 관 계 인 주 소 성 명 | | |
| 1 | 담십리동 2-24,750 양치상(현 2-247,749) | 건 물 | 철근콘크 리트조경 옥개 2층 | 50.8 | 창 고 | 강남구천당동 81 (효성빌라 5 동 103호) | 김재욱 | |
| 2 | 담십리동 750 (현 749) | " | 스래트 세멘브려 조 | 100.5 | 공 장 | 상 동 | 김재욱 | |
| 3 | 3-22 | " | 연와조 세멘와습 | 14.55 | 잡 포 | 동대문구담십리동 3-22 | 박태호 | |

사 령

1986년 3월 17일자

령 제 108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박형원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교육 파견 (제 5 기 시장, 군수반 '86.3.17 - '87.3.16) | 내 무 국 | 지방부이사관 |
| 권이국 | " | " | " |
| 고오석 | " | " | " |
| 윤두영 | " | " | 지방서기관 |
| 조삼섭 | " | " | " |

령 제 109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신영식 |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전남 승주군 새마을과 | 지방행정사무관 |

| 1986년 3월 12 일자 | | 명 제 110 호 | |
|----------------|---|-----------|--------|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김 용 호 | 국가공무원법 제 40 조의 3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 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 서 기 관 |
| 1986년 3월 17 일자 | | 명 제 111 호 | |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허 동 인 | 대법원판결 (사건 85누849 86.2.11)에 의하여 '84.6.27 자 "파면" 처분을 동일자로 취 소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종합건설본부 | 지방행정주사 |
| 서울특별시장 | | | |